

조선총독부관보(朝鮮總督府官報) 제2340호(號) 1934(昭和 9)년 10월 27일 토요일

○ 고 시(告示)

조선총독부고시(朝鮮總督府告示) 제530호(號)

1932(昭和 7)년 조선총독부고시(朝鮮總督府告示) 제336호(號)(조선국유철도 여객 및 하물운송규칙[朝鮮國有鐵道旅客及荷物運送規則]) 중(中) 1934(昭和 9)년 11월 1일부터 아래[左]와 같이 개정(改正)함.

1934(昭和 9)년 10월 27일 조선총독(朝鮮總督) 우가키 가즈시게(宇垣一成)

제93조(條) 전망일등침대차(展望一等寢臺車), 일등침대일등차(一等寢臺一等車) 또는 이등침대차(二等寢臺車)의 특별실(特別室)을 대절(貸切)로 하는 경우에는 상당(相當) 등급(等級)의 대인(大人) 2인분(人分)에 대(對)한 보통여객운임(普通旅客運賃)의 6할(割) 증액(增額)을 수수(收受)함. 단(但) 현(現) 승차인원(乘車人員)이 2인(人)을 초과(超過)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인원(超過人員)에 대(對)해 별도(別途)로 상당(相當) 등급(等級)의 보통여객운임(普通旅客運賃)을 수수(收受)함.

제106조(條) 중(中) 제1호(號)를 아래[左]와 같이 개정(改正)함.

1 제7, 8열차(列車)의 급행요금(急行料金)

등급(等級)	킬로미터(浬程)	5백킬로미터(浬)까지	8백킬로미터(浬)까지	801킬로미터(浬) 이상(以上)
3	등(等)	75전(錢)	1 원(圓)	1원(圓) 25전(錢)
2	등(等)	1원(圓) 50전(錢)	2 원(圓)	2원(圓) 50전(錢)
1	등(等)	2원(圓) 50전(錢)	3 원(圓)	3원(圓) 75전(錢)

제106조(條)의2중(中) 1, 「부산(釜山)·경성(京城)」을 「부산(釜山)·봉천(奉天)」으로, 2「부산(釜山)·봉천(奉天)」을 「부산(釜山)·신경(新京)」으로, 3「경성(京城)·상삼봉(上三峰)」을 「경성(京城)·웅기(雄基)」로 개정(改正)함.

제109조(條) 중(中) 제106조(條)제1항(項)제1호(號)의 급행권(急行券: 특종급행권[特種急行券])을 아래[左]와 같이 개정(改正)함.

제106조(條)제1항(項)제1호(號)의 급행권(急行券: 특종급행권[特種急行券])

제1종(種) 5백킬로미터(五百浬)까지의 대인(大人)·소아용(小兒用: 표면[表面] 중앙[中央] 횡[橫]으로 폭[幅] 0.2센티미터(浬)의 적색선[赤色線] 한 줄[條]을 긋는다).

갑(甲) 표면(表面) 을(乙)

특종급행권 제7,8열차(列車) 5백킬로미터까지 부터 승차 통용발매일 모두 5일 1회(回)만 유효(有效) 1등요금 급2원(圓) 50전(錢) 소	부 산 특 제 1 종
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5.7센티미터(浬) 소아단편(小兒斷片)

이면(裏面)

번 호 (부산역발매)	번 호
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

제2종(種) 8백킬로미터(五百粍)까지의 대인(大人)·소아용(小兒用: 표면[表面] 중앙[中央] 횡[橫]으로 폭[幅] 0.2센티미터(浬)의 적색선[赤色線] 두 줄[條]을 긋는다).

갑(甲)	표면(表面)	을(乙)	이면(裏面)
	특 종 급 행 권 제7,8열차(列車) 8백킬로미터까지 부터 승차 동용발매일 모두 5일 1회(回)만 유효(有效) 1등요금 3원(圓)	부 산 특 계 2 소 종	변 변 호 호 (부산역발매)
	5.7센티미터(浬) 소아단편(小兒斷片)		

제3종 8백킬로미터(五百粍) 이상(以上)의 대인(大人)·소아용(小兒用: 표면[表面] 중앙[中央] 횡[橫]으로 폭[幅] 0.2센티미터(浬)의 적색선[赤色線] 세 줄[條]을 긋는다).

갑(甲)	표면(表面)	을(乙)	이면(裏面)
	특 종 급 행 권 제7,8열차(列車) 8백킬로미터까지 부터 승차 동용발매일 모두 5일 1회(回)만 유효(有效) 1등요금 3원(圓) 75전	부 산 특 계 3 소 종	변 변 호 호 (부산역발매)
	5.7센티미터(浬) 소아단편(小兒斷片)		

제114조(條) 침대(寢臺)의 설비(設備)가 유(有)한 열차(列車) 및 그 등급(等級)은 아래[左]와 같이 함.

열차운전구간(列車運轉區間)	열차번호(列車番號)	등급(等級)	침대차연결구간(寢臺車連結區間)
1 부산(釜山)·신경(新京) 간(間)	1, 2	각(各) 등(等)	전(全) 구간(區間)
2 부산(釜山)·봉천(奉天) 간(間)	7, 8	각(各) 등(等)	전(全) 구간(區間)
3 부산(釜山)·봉천(奉天) 간(間)	3, 4, 5, 6	2, 3등(等)	전(全) 구간(區間)
4 부산·단동[安東] 간(間)	9, 10	2, 3등(等)	2등(等) 전(全) 구간(區間) 3등(等) 경성(京城)·단동[安東] 간(間)
5 경성(京城)·웅기(雄基) 간(間)	507, 508	2, 3등(等)	전(全) 구간(區間)
6 경성(京城)·청진(淸津) 간(間)	503, 504	2, 3등(等)	2등(等) 전(全) 구간(區間) 3등(等) 경성(京城)·함흥(咸興) 간(間)
7 경성(京城)·목포(木浦) 간(間)	301, 302	2, 3등(等)	전(全) 구간(區間)

전향열차(前項列車)의 외(外) 필요(必要)가 유(有)하다고 인정(認定)되는 경우에는 임시(臨時)로 침대차(寢臺車)를 연결(連結)하여 침대권(寢臺券)의 발매(發賣)를 해야 함.